

2003 主要業務報告

2003. 7

稅務管理課

보 고 순 서

- 일 반 현 황

- '03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

- '03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

- 특 수 사 업

일 반 현 황

I. 직원현황

구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직	비고
정원	32	1	5	5	12	9	0	
현원	34	1	5	8	14	6	0	

II. 담당별 업무분장

담당별	분장사무
세입총괄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·구세 세입 분석·평가 및 조례·규칙관리 · 매월 세입 징수 보고서(현계표)작성·보고 · 시·구세 가산금(증가산금)결의, 소인 · 시·구세 감액, 과오납금 환부결정결의 및 통지·총당 · 시·구세 영수필 통지서 및 징수부·수납부의 관리
징수 1 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체납정리 총괄계획수립 및 집행 ·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총괄 · 담당동(여의동, 양평동, 신길동) 전세목 시효 및 불납결손 처리 · 세무종합 전산총괄 및 주민등록전산망 관리 · 담당동(여의동, 양평동, 신길동)의 체납세 징수 및 정리
징수 2 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계장비 관련 체납세 및 고발예고 총괄 · 급여압류·예금압류 및 신용정보 제공 총괄 · 담당동(영등포, 당산, 도림, 문래, 대림동)전세목 시효 및 불납결손 처리 · 수시분 독촉고지서 및 면허세 체납 총괄 · 담당동(영등포, 당산, 도림, 문래, 대림동)체납세 징수 및 정리
세외수입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·구 세외수입 및 체납관리 총괄 · 세외수입 세원 발굴 및 사용자 수수료 효율조정 총괄 · 세외수입 증대 방안 제도 연구 및 개선 · 세외수입 징수 보고서(현계표) 작성·보고
체납징수기동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액체납자(300만원이상) 체납정리 및 계획수립 총괄 · 압류재산 공매 및 환가 총괄 ·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총괄 · 고액체납자 전세목 시효 및 불납결손 처리

'03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

I. 세입 과징현황

2003. 5. 31현재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목 표 (A)	조 정 (B)	징 수 (C)	비 율		전년 동기		증 감		
				A : C	B : C	A : C	B : C	A : C	B : C	
총 계	586,833	266,652	256,797	43.76	96.30	54.86	96.26	△11.10	0.04	
구	계	147,088	66,745	64,739	44.01	96.99	53.20	93.25	△9.19	3.74
지	소 계	62,112	10,882	10,713	17.25	98.45	15.94	98.63	1.31	△0.18
	재 산 세	11,868	11	10	0.08	90.91	△0.27	100.00	0.35	△9.09
	종합토지세	26,976	209	205	0.76	98.09	0.11	64.58	0.65	33.51
	면 허 세	1,076	1,071	916	85.13	85.53	79.64	87.70	5.49	△2.17
	사 업 소세	21,083	9,018	9,009	42.73	99.90	41.57	99.98	1.16	△0.08
	과 년 도	1,109	573	573	51.67	100.00	62.09	100.00	△10.42	0.00
세	소 계	84,976	55,863	54,026	63.58	96.71	84.22	92.46	△20.64	4.25
	세 외 수입	43,127	43,447	41,610	96.48	95.77	106.99	90.40	△10.51	5.37
	보 조 금	16,385	6,393	6,393	39.02	100.00	53.42	100.00	△14.40	0.00
	조정교부금	25,464	6,023	6,023	23.65	100.00	42.38	100.00	△18.73	0.00
	지방교부세	0	0	0	0.00	0.00	0.00	0.00	0.00	0.00
계	439,745	199,907	192,058	43.67	96.07	55.45	97.34	△11.78	△1.27	
시	부동산취득세	51,396	15,993	14,901	28.99	93.17	53.93	93.40	△24.94	△0.23
	부동산등록세	100,506	32,286	32,262	32.10	99.93	57.20	99.46	△25.10	0.47
	도 시 계획세	15,068	22	21	0.13	95.45	△0.18	104.00	0.31	△8.55
	공 동 시설세	8,958	12	11	0.12	91.67	△0.44	100.00	0.56	△8.33
	지 역 개발세	55	23	21	38.18	91.30	56.36	96.88	△18.18	△5.58
	차 량 취득세	8,980	5,113	4,901	54.58	95.85	48.93	96.08	5.65	△0.23
	주 민 세	186,458	117,380	111,035	59.55	94.59	60.63	96.48	△1.08	△1.89
	자 동 차 세	16,699	838	720	4.31	85.92	2.19	91.54	2.12	△5.62
	차 량 등록세	16,942	5,959	5,943	35.08	99.73	38.80	99.89	△3.72	△0.16
	세 레 저 세	28,566	8,557	8,557	29.96	100.00	41.90	100.00	△11.94	0.00
	지 방 교육세	-	11,978	11,940	-	99.68	-	99.62	-	0.06
	과 년 도	5,577	1,746	1,746	31.31	100.00	0.00	100.00	31.31	-

II. 체납 지방세 징수

□ 체납지방세 총액 징수기간 설정운영

- 상반기 : 2003. 4. 1 ~ 5. 31 (2개월간)
- 하반기 : 2003. 10. 1 ~ 11. 30 (2개월간)

□ 체납세 징수실적

2003. 5. 31현재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	현 년 도		과 년 도		증감(과년도)	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금 액	비율
계	34,617	2,685	7,515	366	27,102	2,319	△448	△7.1%
구 세	9,585	729	6,224	156	3,361	573	△38	△10.4%
시 세	25,032	1,956	1,291	210	23,741	1,746	△410	△7.0%

□ 체납자 조치 실적

- 부 동 산 압 류 : 621건 7,597백만원(징수 592건 6,183백만원)
- 자 동 차 압 류 : 5,353대 2,536백만원(징수 3,363대 5,753백만원)
- 자동차번호판영치 : 1,536대 1,581백만원(징수 907대 538백만원)
- 예금및금융압류 : 351명 1,467백만원(징수 616명 2,088백만원)
- 신용정보제공 : 43명 993백만원(징수 32명 300백만원)
- 부동산공매 의뢰 : 1건 5백만원(징수 6건 64백만원)
- 차 량 공 매 의뢰 : 3대 18백만원
- 체 납 세 액 고 지 서 발 송 : 3회 483,787건
- 체납세고지서 반송분 주소추적 확인 재발송 : 5,280건
- 체납지방세 납부안내문 발송 : 1회 58,929건
- 체 납 자 재 산 및 직 장 조 회 : 2회 16,142명

Ⅲ. 세외수입 과징실적

2003. 5. 31현재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목 표 (A)	조 정 (B)	정 수 (C)	진 도		전 년 동 기		
				A:C	B:C	A:C	B:C	
총 계	43,127	43,447	41,610	96.48	95.77	106.98	90.40	
경 상 직 수 입	소 계	23,728	9,924	9,713	40.93	97.87	35.08	97.26
	재 산 임 대	220	100	74	33.68	73.95	67.44	83.38
	사 용 료	3,172	2,905	2,757	86.93	94.92	83.66	93.24
	수 수 료	4,674	1,911	1,873	40.08	98.01	51.68	98.53
	징 수 교 부 금	14,717	4,719	4,720	32.07	100.00	19.22	100.00
	이 자 수 입	945	289	289	30.58	100.00	47.44	100.00
임 시 직 수 입	소 계	19,399	33,523	31,897	164.43	95.15	187.72	89.09
	재 산 매 각	737	431	395	53.57	91.66	264.89	26.67
	순 세계 잉여금	14,370	29,566	29,566	205.75	100.00	214.79	100.00
	이 월 금	0	-	-	-	-	0	0
	융자금원금수입	3	3	3	100.00	100.00	66.73	100.00
	부 담 금	0	7	7	-	100.00	0	0
	잡 수 입	2,731	2,815	1,225	44.84	43.50	47.80	42.97
과 년 도 수 입	1,558	701	701	45.01	100.00	77.89	100.00	

□ 추 진 실 적

- 2003년도 세외수입 정수목표 및 계획 시달 (2003. 1월)
 - 추 진 기 간 : 2003. 1. 1 ~ 2004. 2. 28
 - 정수목표액 : 43,127백만원
- 과년도 체납금 부서별 목표액 배시 및 중점정리기간 운영 시달(1월)
 - 상반기 : 2003. 7. 1 ~ 9. 30(3개월간)
 - 하반기 : 2003.11. 1 ~ 12.31(2개월간)
 - 결산기 : 2004. 1. 1 ~ 2.28(2개월간)
- 2003년 세외수입 정수 및 체납세 정리대책 보고회 - 1회(5월)
- 세외수입 심사분석 - 1회(5월)
-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재산 및 직장조회(2~3월)
 - 전국재산조회 : 1회 20,960건
 - 직 장 조 회 : 1회 1,984건
- 2002년도 세외수입 실적평가 및 시상으로 사기 양양(4월)
 - 우수부서 포상 : 6개부서 1,700천원

IV. 주요업무 추진사항

□ 2002년도 시세입 종합평가

- 평가기간 : 2002. 1. 1 ~ 2003. 2. 28(2002회계년도)
- 평가내용 : 자치구별 시세 세입징수실적 및 세무행정업무 전반
- 평가결과 : 최우수구 선정
- 인센티브예산 지원액 : 568백만원
- 향후계획
 - 2003년도 시세입평가에도 최우수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,
 - 구민에게는 수준높은 세무행정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

□ 체납징수기동반 신설 운영

- 신설목적 : 급증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납을 일소하고 구 자주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- 추진업무
 - 과년도 고액체납자(300만원이상) 특별관리
 - 압류재산 공매 및 환가 총괄
 -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
- 기대효과 : 고액체납자의 집중관리로 체납징수액 증가 및 누적체납액 10%이상 감소예상

□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실태파악

- 대 상 : 2회이상 체납차량(9,621대)
- 추진내용
 - 사실상 미소유차량 및 폐차된 차량을 체납자 개별면담 및 사실확인을 통해 정밀 실태조사
 - 실태조사 결과 전산입력(100%완료)
- 향후계획 : 사실상 미소유차량 및 폐차된 차량은 부과유예 조치

□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정비

- 대 상 : 300만원 이상 체납자(1,789명, 12,176백만원)
- 정리실적 : 1,789명 30,082건 12,176백만원(100%추진)
- 추진사항
 - 체납내역 및 사유, 실태 등 전반사항 기록유지
 -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 사항 기록관리
 - 각종 진행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·관리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독려

'0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

- 지방세 징수목표 차질없는 달성
-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·관리 강화
- 고액체납 지방세(300만원이상) 징수대책
-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

'03.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

I. 지방세 징수목표 차질없는 달성

□ 세 입 목 표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2003예산 (A)		2002예산 (B)		비 교 (증·감)		비 고
	구성비(%)	구성비(%)	금 액	비 율			
합 계	62,112	100	59,203	100	2,909	4.9	
구 재 산 세	11,868	19.1	11,295	19.1	573	5.1	
구 종 합 토 지 세	26,976	43.4	25,976	43.9	1,000	3.9	
구 면 허 세	1,076	1.7	1,056	1.8	20	1.9	
세 사 업 소 세	21,083	34.0	19,892	33.6	1,191	6.0	
과 과 년 도	1,109	1.8	984	1.6	125	12.7	

□ 2003. 5월말현재 세입실적 : 10,713백만원

- 2003년도 목표대비 17.25% 진도로 최근 3년간 5월말 평균 진도율 16.55% 보다는 0.70%증가 및 전년도 5월말(9,865백만원)보다 848백만원 증가하였으나,
- 국내외적으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징수에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안정적인 세수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됨.

□ 세부추진계획

- 자진납부 유도 징수율 제고 노력 강화
 - 납세안내문 발송 납부독려, 인터넷 및 지역홍보매체 활용, 입간판 설치 등
- 지방세 인터넷 및 카드 납부 홍보 강화
- 세입실적 분석 평가 보고회 : 년 4 회
 - 매분기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
- 동별 책임 담당자 지정 징수독려 강화
- 반송고지서 주소조회 및 주민(법인)등록번호 미입력자 보완으로 정확한 송달
- 체납 발생시 적기 채권 확보
-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강화
- 소재불명 및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세 불납결손 적극 추진
- 신용정보제공, 관허사업제한, 검찰고발 등 개인 신용제재 및 행정제재 강화

II.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·관리 강화

□ 세입 목표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2003예산		2002예산		증·감		비 고
		구성비(%)		구성비(%)	금 액	비 율	
총 계	43,127	100	52,733	100	△9,606	△18.2	
경상적수입	소 계	23,728	55.0	24,063	45.6	△335	△1.4
	재산임대수입	220	0.5	173	0.3	47	27.3
	사용료수입	3,172	7.4	2,985	5.6	187	6.3
	수수료수입	4,674	10.8	4,250	8.1	424	10.0
	징수교부금	14,717	34.1	14,972	28.4	△255	△1.7
	이자수입	945	2.2	1,683	3.2	△738	△43.9
임시적수입	소 계	19,399	45.0	28,670	54.4	△9,271	△32.3
	재산매각수입	737	1.7	4,304	8.2	△3,567	△82.9
	순세계잉여금	14,370	33.3	19,274	36.5	△4,904	△25.4
	이월금	0	0	919	1.7	△919	△100.0
	융자금회수수입	4	0.1	7	0.1	△3	△50.0
	부담금	0	0	390	0.7	△390	△100.0
	잡수입	2,730	6.3	2,582	4.9	148	5.7
	과년도수입	1,558	3.6	1,194	2.3	364	30.5

□ 추진계획

- 2003년 세입목표 추진 강화
 - 2003년 목표액 달성 대책수립계획 시달(2003. 1월)
 - 세외수입부서 지도·관리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
-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정리기간 운영
 - 상반기 : 2003. 7. 1 ~ 9.30(3개월)
 - 하반기 : 2003.11. 1 ~ 12.31(2개월)
 - 주요추진내용
 -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후 채권확보
 - 소재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과감한 불납결손
-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
 - 무단 점·사용 시설 색출 세입화
 - 무료 제공시설 유료화 추진
-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 실시
 - 세외수입 징수실적 분석 : 분기별 1회 (연4회)
 -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: 상·하반기 및 결산기
 - 실적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사기 양양

Ⅲ. 고액체납 지방세(300만원이상) 징수대책

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, 지방세 체납액 중 과년도 고액(300만원이상) 체납자가 39.6%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 정리활동으로 체납세를 일소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함.

□ 추진기간 : 2003. 4. 1 ~ 2003. 12. 31(연중)

□ 체납현황 (2003. 2월말현재)

○ 1,789명 30,082건 12,176백만원

□ 정리목표 (2003년도 목표)

○ 1,500백만원 (체납액의 12%)

※ 추진실적 : 2003. 4. 1 ~ 5. 31(2개월)

- 징수실적 : 654백만원 (목표대비 징수율 43.6%)

- 결손처분 : 653백만원

□ 세부추진계획

○ 월별 추진계획에 의한 체납정리

- 월별 추진일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실시

○ 체납현황에 대한 세목별·체납사유별 정밀분석으로 철저한 징수대책 강구

○ 징수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

- 시효결손 : 징수권 소멸(5년)로 시효완성된 체납자

- 불납결손 : 체납자 재산조회 등 조사후 무재산자

○ 상습·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

-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

- 급여·예금·부동산 등 압류조치 강화

-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강화

○ 체납징수기동반원에 대한 징수요원화로 총력 정리체제 구축

- 체납징수기동반 신설 : 2003. 4월

- 인 원 : 4명(6급 1명, 8급:3명)

IV.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

□ 체납 현황 (2003. 5월 31일 현재)

		총 224,083건 28,410백만원	
○ 현년도 : 15,084건 ⇒ 7,991백만원	- 구 세	6,744건	168백만원
	- 시 세	8,340건	7,823백만원
○ 과년도 : 208,999건 ⇒ 20,419백만원	- 구 세	29,519건	2,987백만원
	- 시 세	179,480건	17,432백만원

□ 정 리 목 표

- 현 년 도 : 체납액의 50% 이상
- 과 년 도 : 체납액의 15% 이상

□ 중점추진사항

- 체납세 징수목표 설정 책임 달성
- 체납액 징수활동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적 추진
- 고질·고액 체납자 제재 조치 강화
-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과감한 결손처분

□ 세부 징수 대책

- 체납정리 기간 설정 운영
 - 상 반 기 : 2003. 4. 1 ~ 5. 31 (2개월간)
 - 하 반 기 : 2003.10. 1 ~ 11. 30 (2개월간)
- 체납액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
 - 인터넷, 반상회, 영등포구소식지, 지역신문, 입간판 설치 등
- 체납자 재산압류,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통보 등 제재 강화
-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 철저
-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행
- 실익있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
- 체납고지서 적정 송달을 위한 오류 주민(법인)등록번호 및 주소지 수정
- 징수 불가능 체납금 과감한 불납결손 처분

특 수 사 업

- 압류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 추진

-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요구로 고질 체납자 정리

1. 압류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 추진

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액이 누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압류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일환으로 압류차량을 인도명령하여 신속한 체납처분을 수행 인터넷에 의한 공매를 추진하고자 함

□ 현 황

- 시 세 체 납 : 179,480건 17,432백만원
- 자동차세체납 : 58,710건 6,182백만원 (대수 : 17,732대)
※시세 체납액의 35.5% 점유
- 자동차 압류 : 15,984대

□ 대 상 : 압류차량 중 5회이상 계속체납차량

□ 관련근거

- 지방세법 제28조
-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동법 제61조~제84조
-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~제81조

□ 문제점

- 압류차량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 고발조치
⇒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

□ 추진방법

- 인터넷 공매전문 업체를 통한 공매
- (주)오토마트 홈페이지(www.automart.co.kr)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매각

□ 기대효과

- 인터넷을 통한 압류자동차 매각으로 체납처분의 공정성 확보
-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 천명
- 세무행정의 대외적 홍보효과 및 조세정의 구현

II.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요구로 고질 체납자 정리

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허가·인가·면허 및 등록과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취소를 요구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체납현황

- 체납자 : 대성전기와 1,728명
- 체납건수 및 금액 : 14,435건 4,132백만원
- ※ 체납자명단 작성기준일 : 2003. 4. 1일

□ 관련근거

-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
-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

□ 관허사업 주무관청

- 내부기관 : 건설관리과, 공원녹지과, 교통지도과 등 15개부서
- 외부기관 : 건설교통부, 관세청 등 15기관

□ 문제점

- 각종면허를 받은 납세자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세무부서가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없음
- 관허사업 주무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결여

□ 추진사항

- 체납자 명부 및 관허사업제한 결과통보 양식 발송
 - ※ 세무관리과 → 관허사업 주무관청
-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 결과통보
 - ※ 관허사업 주무관청 → 세무관리과
-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예고 통지문 발송(세무관리과)

□ 기대효과

- 관허사업 주무관청의 협조 및 독려로 체납징수 제고
- 지방세체납자의 원천적인 관허사업제한으로 조세정의 실현